

비영리법인 등 총회 소집 관련 코로나19 대책

2020. 2. 27 법무심의관실

1 검토 배경

-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'공익법인법')」에 의하면, 비영리·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,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
- 그런데,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및 결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

	민법	공익법인법
권한	제68조(총회의 권한)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<u>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</u>	제7조(이사회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1. 공익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(이하생략)
결의 방식	규정 없음	제9조(의결정족수 등)①,② 생략 ③ <u>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.</u>
결산 보고 등	<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> 제7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)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<u>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(이하 생략)	제12조(예산 및 결산 등) ① 생략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.

2 법 해석상 결의 방법

「공익법인법」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

- 「공익법인법」은 예산·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(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) 있는데,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(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)
- 공익법인법이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에 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 또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
 - 즉,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①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, ②참여자 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(이사임을 확인), ③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
 -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,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
- 따라서,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, 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,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절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

- 「민법」은 예산·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(민법 제68조), 총회결의는 사원과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(민법 제75조 제1항),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(민법 제73조 제2항),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(민법 제75조 제2항)
- 따라서, 비영리법인은 예산·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

-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,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, 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

※ 각 행정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서류의 제출 의무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는 각 규칙 및 법인의 소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

③ 법무부 지침

- 「공익법인법」 상 공익법인은 대면회의가 아닌 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 등 원격통신 방법에 의한 이사회 진행 후 2020년 3월 31일까지* 각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 제출

*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‘..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’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「민법」 상 비영리법인 또한 물리적으로 사원을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써 총회결의 진행 후 각 서류 주무관청에 제출

- 다만, 서면결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회신, 다자간 통화, 다자간 영상통화 등 원격통신 방법에 의한 총회 진행을 통해 결의 후 각 서류 제출도 가능

※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‘매 사업연도 끝난 후 2개월 내’ 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‘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 제7조에 따른 각 호의 서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